

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기관명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
	대표자 성명	사무소 전화번호	
	사무소 주소		

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농촌진흥청장 ·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
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신청인 제출 서류 · 자료	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서류검토	→	지정서 발급
--------	---	----	---	------	---	--------

신청인

처리기관: 농촌진흥청 ·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치도